

의안번호	2204398
의 퇴 인	김태호의원
회 답 일	2024.10.28
추 계 번호	24B4089

부산 · 양산 · 울산광역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를 건설하여야 함 1. 부산광역시·경상남도 양산시·울산광역시 간 여객·물류의 확장과 철도의 유기적 기능 발휘 및 복선전철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 3.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화합 도모 4. 수도권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의무규정
2	안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의 수요 예측 2. 광역철도 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제9조에 따른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4	안 제12조 (주변지역개발사업)	시·도지사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13조 (재정 지원)	국가는 부산·양산·울산광역시철도 건설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부산·양산·울산광역시철도 운영 비용은 전액을 부담함. 다만, 건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 재정 지원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양산·울산광역시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조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제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3조(기본방향)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3	안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4	안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5	안 제13조(재정 지원)	
6	안 제14조(부담금의 감면)	

2. 상세사유

- 제정안은 부산·양산·울산광역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양산·울산광역시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른 부산·양산·울산광역시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6)」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6)」에 신규 추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중에 있음(2023.6~)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의 부산·양산·울산광역시철도사업의 총연장은 48.78km, 복선전철로서, 총사업비는 30,424 억원(국비 : 70%, 지방비 : 30%)

[표 2] 사업구간 및 총사업비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부산~양산~울산 광역시철도	부산 노포~울산역	복선전철	48.78	30,42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제정안에 따른 기본방향(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안 제10조)·주변지역개발사업(안 제12조)·안 제13조(재정 지원)·부담금의 감면(안 제14조) 등에 따른 관련 소요비용은 현재 추진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부산·양산·울산광역시철도 건설지역, 시·종착점 등이 확정된 후에 추산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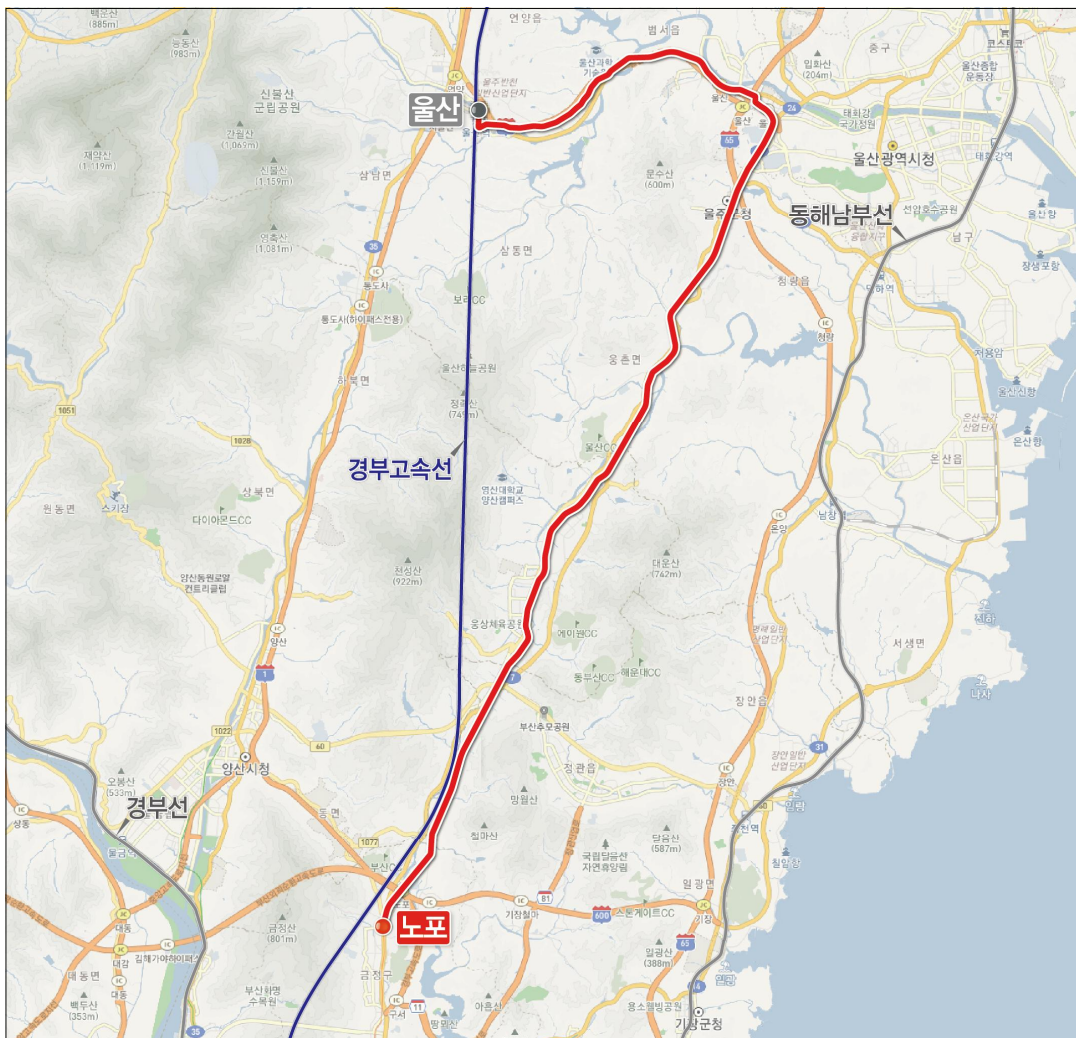
[참고자료]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사업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사업명 및 사업개요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준

- (사업명)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 (사업구간) 부산 1호선 노포역~울산 KTX 울산역, 48.78km, 복선전철
- (총사업비) 30,424 억원(국비 : 70%, 지방비 : 30%)
- (추진경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21.7)
 →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21.8) → 사전타당성조사('21.11~'23.6)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3.2)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23.6~)

[노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준



□ 철도건설사업 절차 및 단계별 법적 근거

